#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박충권

이헌승·배준영·박 정

구자근 • 이인선 • 김태호

백종헌 • 조경태 의원

(119]

##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 국 군대에게 공여된 이후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소된 공여구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및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도 공여구역은 장기간 반환되고 있지 않아 인구소멸과 도시붕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공여구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하고,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운용은 국방 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미반 환공여구역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학교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 의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연수 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골프장

- 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산림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반환공 여구역이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체육시설·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

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주민 중 전직·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 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을 말한다.
- 3. "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 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구역을 말한

다.

- 4.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5.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 6.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 "반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7.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반환공 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대상이 된 공여구역 중 10년이상 반환되 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8. "시·도지사"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 9.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원에 관

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 제5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의 100분의 30 및 같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4. 차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을 위한 자금
- 3. 제26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 4. 제27조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을 위한 자금
- 5. 차입금의 워리금 상환
- 6. 회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 7.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다.
-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장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8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1.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장기미반화공여구역 지역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4. 장기미반환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 6.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중 제27조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 자의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 7. 공여구역 반환 지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공청사 건립 등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중 장기미반환공

여구역에 관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제8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시행자) ①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5.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

- 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 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처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해당 처분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학교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협의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신설·증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학생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학생 정원을 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 정원을 정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연수 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연수 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 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제18조(국유림의 대부 등의 특례)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 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 산·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매각의 용도로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다.
  - ④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도로관리청의 특례) 「도로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 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 이 된다.
- 제21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역특화발

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부지조성비
  - 2. 용지매입비
  - 3.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 4.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 5.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 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 및 반환으로 인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 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방세 손실분을 보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반환 이후에도 지방세 손실분을 고려하여 10년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공여구역으로 사용된 토지를 반환받아

정화작업 수행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 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정화를 할 수 있다.

-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있다.
  - 1.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2. 사업목적, 규모,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제26조(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체육시설·공원·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주민 중 전직·전업하여야 하는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우선 고용)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

행할 때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 제29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 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6.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 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 서의 행위 허가
- 1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 인가
-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1.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 22.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설계심의
-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2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시 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⑤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33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반환시까지 지원해야하고, 반환이 완료된 후 10년 간 지원해야 한다.
  - ④ 정부는 미반환된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 획에 의한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공장

- 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35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은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중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 변상금·신탁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지기이전특별회계로부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로 전입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 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 3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